

등록번호	재무과-9099
등록일자	2015. 9. 24
결재일자	2015. 9. 24
공개구분	공개

결	주무관	재무팀장	재무과장 (간사)	재정위원장
재				
협	사무국장 직무대리 (총무과장)			

2015학년도 제3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5. 9. 21.(월) 15:00			
장 소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안 건	1.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이용(1차) 2. 대학회계 직원의 총 정원			
심의 · 의결 사항	1.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이용(1차) → *일부 수정 통과 *일부 수정 사항: 별표 연번 15번 의과대학 학생상담관련경비 (-1,000만원)를 학생자치행사 소모품구입비로 이용 건은 소관 기관의 철회 요청에 따라 이용 제외하고 476,802천원 이용 승인 2. 대학회계 직원의 총 정원 → 원안 통과			
위원명단	교무처장	이두희	이두희	일반직
	학생처장	최정기	최정기	
	연구처장	송진규	송진규	
	기획조정처장	안영진	안영진	
	사무국장 직무대리	윤상국	윤상국	
	학무본부장	최승현	불참	
	평의원회부의장	김원재	김원재	

■ 회의 내용

1. 개의((開議) 선언 (위원장 15:00)

2. 2015학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승인

- 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함.

3. 안건 심의

가.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출예산 이용(1차)

- 재무과장: 회의자료에 의거 세출예산 이용(1차) 개요와 19개 기관 22건, 총 금액 486,802천원에 대한 이용 소요사항을 설명하고, 아울러, [별표 1] 연번 15번 의과대학 학생상담관련경비(-10,000천원)를 학생자치행사 소모품구입 비로 이용하는 건은 소관기관인 의과대학에서 이용 철회 요청을 해왔음을 알림.
- 최웅용 위원: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이용 등에 대해 재정위원회와 평의원회 등의 담당 역할을 질문함.
- 재무과장: 본예산, 추경예산은 평의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평의원회 심의 없이 각각 재정위원회와 총장 승인사항임.
- 정용석 위원: 어린이집 운영비와 용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공공요금에서 충당하는데 공공요금이 여유가 있어서 충당한 것인지 질문함.
- 재무과장: 공공요금도 여유가 없지만 우선 충당하고 향후 발생할 불용액으로 공공요금을 다시 충당해야 함을 설명함.
- 최웅용 위원: 연말이면 불용액이 기관별로 많이 발생하는데 예산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으며, 이용신청서를 받아서 이미 불허한 건은 어떤 기준을 따른 것이며, 용지 생태습지 조성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데 예산 이용을 예상하고 하는 것인지, 외부강사료 산정 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한데 일관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질문함.
- 재무과장: 예산집행률은 기획조정과와 협의해서 분기별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이용 제한기준은 회의자료 6쪽 하단의 기준과 향후 대학재정 수입의 감소에 대비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이용을 불허하기로 기획조정처와 협의해서 조정하였음. 용지 생태습지 조성사업 인건비는 농업기술교육원의 기존 캠퍼스 조경관리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있으며 우선 집행한 예산과 향후 부족분에 대해 금번 이용으로 충당할 계획임. 외부강사료는 교직원 행동강령 등을 참고하

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음.

- 송진규 위원: 예산이 남아서 이용을 하는 것인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필요해서인지 질문함.
- 재무과장: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이용임을 답변함.
- 최웅용 위원: 사회대 학과 근로학생 지원금의 성격을 질문함.
- 재무팀장: 사회대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본부 학생과에서 선발하는 근로장학생과는 별도로 사회대 자체선발 장학생임을 답변함.
- 위원장: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별표 1] 연번 15번 의과대학 학생상담관 현경비(-10,000천원)를 학생자치행사 소모품구입비로 이용하는 건은 의과대학의 철회 요청에 따라 이용을 불허하고 나머지 476,802천원의 이용을 승인함.

나. 대학회계 직원의 총 정원

- 윤상국 위원: 계약직원을 포함한 대학회계 직원의 총 정원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재정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전남대학교 대학에 두는 직원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명으로 총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함.
- 안영진 위원: 고교교육정상화사업비로 운영되는 입학사정관 8명이 대학회계 직원 정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질문함.
- 윤상국 위원: 입학사정관은 임용 당시부터 대학회계직원으로 관리하되 재원은 해당 사업비로 집행되고, 사업 종료에 따라 고용도 종료되며, 재원별 증감이 있을 경우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임.
- 정상엽 위원: 대학회계직원(정규직)의 현원은 140명인데 예산서 각목명세서의 산출내역은 137명인 이유를 질문함.
- 오선진 재무팀장: 대학회계직원의 인건비는 현원이 아닌 정원기준으로 편성되고, 예산서 각목명세서에 추가 기재된 ‘정원 및 계수조정’으로 인한 인원을 감안하여야 함을 답변함.
- 위원장: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학회계 직원의 총 정원은 원안대로 승인함.

■ 기타 사항

- 이두현 위원의 추가 상정 요청 안건, ‘교육연금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기준 개정안’은 사전에 제출된 안건이 아닌 경우 심의하지 않기로 한 위원회의 사전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안건의 검토 분량 또한 방대하므로 이번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함.

- 제3회 재정위원회 회의록의 간인은 제2회 회의록 간인 위원으로 호선된 최 응용, 정용석, 정상엽 3명의 위원에게 맡기기로 결정함.
- 제1회 회의록 간인 위원 중 정상엽위원은 회의록에 잘못 기록된 내용이 있으므로 간인을 거부하였고, 재무과장이 행정처리 오류를 인정하고 공식사과함. 제1회 회의록의 잘못 기록된 내용은 2회 회의록의 전차 회의록 승인 시에 수정 승인하였으나, 정상엽 위원은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잘못 기록된 회의록에 간인할 수 없다하여 1회 회의록은 위원장이 직접 간인하기로 결정함.

■ 폐회 선언 (위원장 16:20)

2015. 9. 21.

기록자: 서기 (재무팀장) 오 선 진

확인자: 간사 (재무과장) 김 현 재

이정우 김현재 오선진